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9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 : 임호선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・오영환・이용우

이원택 · 임오경 · 장경태

장철민 · 정청래 · 주철현

최혜영 · 한준호 · 홍성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 1항, 제11조).

법률 제 호

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개호"를 각각 "간병"으로 한다.

제11조 중 "명기"를 "명확하게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 (의료지원금) ① 정부는 희	제9조 (의료지원금) ①
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	
상시 <u>개호</u> 또는 보조장구의 사	<u>간병</u>
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・ <u>개</u>	<u>간</u>
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	<u> 병</u>
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	
다.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 (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	제11조 (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
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) 위원	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)
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	
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	
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	
	l l
정하여 신고처를 <u>명기</u> 하여 공	<u>명확하게</u>